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4. 23. 선고 2020고합 18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 원 지 방 법 원 평 택 지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20고합1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정성욱(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변호사 정성락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 20:30경 평택시 B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뽀뽀 좀 해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감싸 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쇄골부위를 손으로 쓸어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7. 2. 20:54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너 자위행위 해 본 적 있어?', '자위행위 몰라?'라고 말을 하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험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수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범죄에관한법률위반(강 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 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10. 28.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 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 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세용(재판장) 하지인 노민식